



#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1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하여 위탁자가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전수익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생전수익자로 본다.
5. "사후수익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6.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7. "유언집행자"라 함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8.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신탁재산)

① 신탁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1]"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동산
2. 부동산
3.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 제4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 (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별 개별재산신탁계약(이하 "개별재산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별재산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재산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 신탁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6조 (신탁관리인 지정)

① 위탁자는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수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 제7조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해당업무를 위임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다.

### 제8조 (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

-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2] "사망통지인 협약서" 또는 [별지 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생전 및 사후수익자, 연속수익자를 "신탁계약 세부내역"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한다.
- ②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③ 제1항에서 정한 1차 연속수익자가 원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경우 다음 차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제1항에서 정한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위탁자는 제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경우 다음 차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 ⑥ 생전수익자, 사후수익자,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종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⑧ 위탁자는 제1 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4] "연속수익자(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제10조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신탁관계법규 및 감독지침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수탁자가 운용하기로 한다

### 제12조 (운용내역통보)

-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별 수익자에게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 (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 내지 신탁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 역시 보전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치료부담, 수탁자가 소유자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제반 비용,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비용발생시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하거나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 )% 이자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 제16조 (신탁보수)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보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상환 받을 수 있고, 신탁재산에서 충당하거나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 (중도해지)

①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별재산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재산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개별재산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6개월 이상의 중병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3.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할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는 특약에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단,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
4.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 제18조 (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생전수익자, 사후수익자, 연속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3.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 (신고사항)

-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사망통지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행위능력 등의 변동 내지 변경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 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20조 (인감신고)

- ①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에 이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비교대조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2조 (신탁계약의 변경)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수탁자의 영업점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소송수행)**

① 수탁자는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위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이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자 등과 협의하여 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전항에 의거 소제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 등과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 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송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는 사유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수탁자가 최선의 노력으로 방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경우 그 패소금액도 전항의 비용으로 보며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24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제26조 (특약 및 기타사항)**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을 이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신탁계약 및 특약으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 (계약서 보관)**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 <특약사항>

위탁자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라 함)과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수탁자"라 함)는 "기본계약"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기본계약"과 "특약사항"을 합쳐서 "신탁계약"이라한다).

[별지1] 유언대용신탁 세부내역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변경) 의뢰서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20   년    월    일

### 위   탁   자

주       소 :

성명 및 상호 :

대 표 이 사 :

법인등록번호 :

### 수   탁   자

주       소 :

성명 및 상호 :

대 표 이 사 :

법인등록번호 :

[별지1] 유연대용신탁계약 세부내역

신탁재산 목록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1 차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2 차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3 차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연속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자와 관계	

**[별지 2] 사망통지인 약서**

사망통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원수익자 <input type="checkbox"/> 1차연속수익자 <input type="checkbox"/> 2차연속수익자 <input type="checkbox"/> 3차연속수익자			
1. 사망통지대상자에 관한 사항				
①사망통지대상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HP)
	대상자구분	<input type="checkbox"/> 원수익자 <input type="checkbox"/> 연속수익자		(E-Mail)
②사망통지대상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HP)
	대상자구분	<input type="checkbox"/> 원수익자 <input type="checkbox"/> 연속수익자		(E-Mail)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①사망통지인(본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HP)
	관계	사망통지 대상자의(    )		(E-Mail)
②사망통지인(본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HP)
	관계	사망통지 대상자의(    )		(E-Mail)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에 관한 사항				
사망통지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사망통지처에 대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약서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사망통지인 지정) 귀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조 (사망통지인 의무) 귀하는 상기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 (사망통지인의 협력의무) 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망통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 (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인이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서하고 본 서류를 수령합니다.				
※ 첨부서류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자료 1부.			20    년    월    일	
			①사망통지인(본인)	(인)
			②사망통지인(본인)	(인)
			수탁자	(인)



